

1. 제정이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1. 2. 5.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법률 및 영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 운영(안 제2조)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수당(안 제3조)

방위산업발전협의회나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사업조정 합의서 및 신청서 등(안 제4조)

방위사업청장이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 간 또는 방산업체 간의 사업조정 합의를 권고하는 경우의 합의서 양식, 제출서류 등을 규정함.

라.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절차 등(안 제5조)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을 요청하려는 자가 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후속군수지원 요청서와 후속군수지원 요청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의 검토절차 등에 대한 관련 사항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개최전에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되, 협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공동의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 상정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고,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상임위원·비상임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상임위원 :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방위사업청의 고위공무원단 나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장
2. 비상임위원 : 국무조정실·중소기업벤처부·제15조 제1조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 나급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서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실무협의회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위사업청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수당) 협의회나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사업조정 합의서 및 신청서 등) ①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 간 또는 방산업체 간의 사업조정 합의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조정 합의서에 따른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합의를 권고한 때에는 그 내용의 요지를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3. 방위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6. 그 밖에 사업조정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

④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조정 신청취하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그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절차 등) ①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을 요청하려는 자(이하 “후속군수지원요청자”라 한다)는 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후속군수지원 요청서에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수출 후속군수지원 종합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후속군수지원 요청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각 군의 참모총장(이하 이 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후속군수지원 가능 여부
2. 후속군수지원의 범위 및 기간
3. 후속군수지원요소의 유상·무상 대여나 양도 가능 여부 및 양도 조건
4. 그 밖에 후속군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제2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장은 검토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장과 협의를 거쳐 후속군수지원이 가능한 기관 및 업무 범위 등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 후속군수지원요청자에게 통보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후속군수지원요청자는 후속군수지원이 가능한 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후속군수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⑥ 그 밖에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의 세부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및 제3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별지 제7호의4서식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7항제4호 중 “「방위사업법」 제44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③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9호 중 “「방위사업법」 제42조”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사업조정 합의서

구 분	당사자(갑)	당사자(을)
상 사 명		
위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여기 당사자들은 아래 내용의 분쟁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결하기로 하며, 본 합의는 최종적인 것으로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에 동의한다.

(1) 분쟁내용 요지

(2) 합의사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의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갑) (서명 또는 기명날인)

당사자(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사업조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6개월
신청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또는 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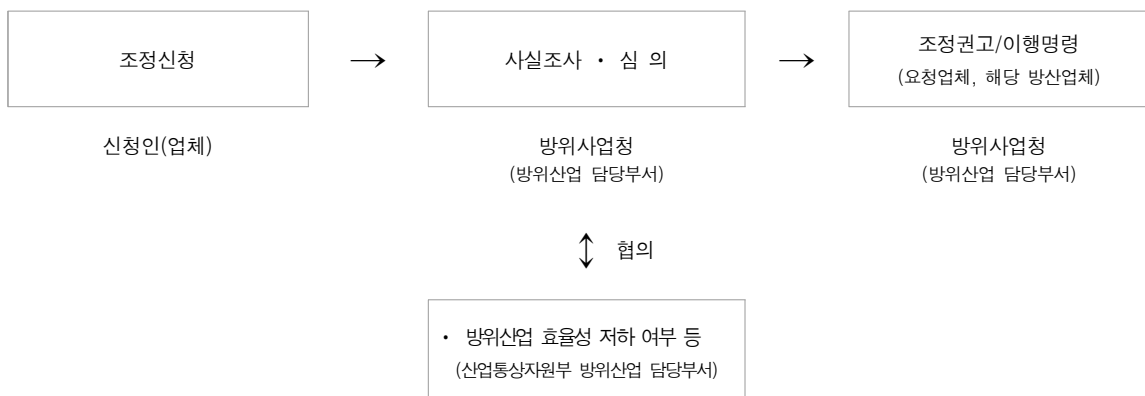
신청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3. 방위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6. 그 밖에 사업조정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사업조정 신청취하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또는 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취하사유				
신청일자	년 월 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조정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처리절차

조정신청 취하



방위사업청



신청취하 통보

신청인(업체)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담당부서)

(해당 대기업, 방산업체)

후속군수지원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60일
관리자 (수출업체)	상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대상장비				
후속군수지원 개요				
종합관리 계획서 (요약)	※ 수출 개요 및 범위, 후속군수지원 범위, 후속군수지원요소에 대한 조달원 관리계획, 정부 및 관계기관에서 지원해야 할 군수지원요소 범위 및 지원 시기 등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출 후속군수지원 종합관리계획서(안)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요 청

요청인

→

검 토

방위사업청
(후속군수지원 업무 담당부서)

→

검토 결과 통보

↕

유관부서 의견조회